

#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233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11. 1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,
- 현재 시행 여건을 반영한 환경인증제 부가조항 변경으로 환경보전 시책업무 지원을 하기 위함.
- 법제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.

## □ 주요내용

-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에서 제58조로 상위법 근거 조항 변경(안 제6조)
- 환경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부가 조항 내용 변경(안 제11조)

## 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 : 2012.10.16 ~ 11. 5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# 안산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를 “안산시”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“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로 하고, “시민”을 “안산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안산시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4조 제2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제37조에 의한”을 “제5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1조 제2항 중 “규칙으로 정한다”를 “시장이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2조 제5항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3조 제3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환경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과장 임 흥 선
	담당팀장 직위·성명	환경정책담당 이 용 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안준식 (행정 2887)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시, 사업자 및 시민이 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본이념)</p> <p>① 시의 환경보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나아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.</p> <p>② 시의 지역개발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범위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.</p> <p>③(생략)</p> <p>제3조(지역환경주권의 보전) 안산시의 환경은 외부의 환경파괴적 힘과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,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지역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제4조(환경보전계획의 수립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~ 4.(생략)</p> <p>5.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</p> <p>③ ~ ⑥(생략)</p> <p>제6조(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)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37조에 의한 환경보전 및 환경관련분야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 하에 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안산시 환경보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	<p>제1조.....안산시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제2조      ①안산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....안산시민(이하‘시민’라 한다)... ..... ..... .....      ②..... .....범위..... .....      ③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..... 시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제4조      ①(현행과 같음)      ②(현행과 같음)      1. ~ 4.(현행과 같음)      5. 그 밖의.....      ③ ~ ⑥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..... .....      제58조에 따른..... ..... .....</p>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수당 등)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「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	제10조..... ..... <u>범위</u>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
제11조(환경인증제) ①(생 략) ②환경인증제의 시행과 관련한 인증기준 및 절차, 등급, 유효기간, 인센티브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1조 ① (현행과 같음) ② ..... ..... ..... 시장이 정할 수 있다.
제12조(지역의 제21의 추진) ① ~ ④ (생 략) ⑤시장은 지역환경보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<u>범위</u>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추진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	제12조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..... <u>범위</u> ..... ..... ..... 1. ~ 3. (생 략)
제13조(사업자의 책무) ① ~ ② (생 략)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. ④ (생 략)	제13조 ① ~ ② (생 략) ③..... <u>그 밖의</u> ..... ..... ..... ..... ④ (생 략)
제15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지원등) ①시는 시민, 사업자, 학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기술지도·조언 또는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②시는 자연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이 많은 시민, 민간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신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<u>범위</u>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.	제15조 ①..... ..... ..... <u>범위</u> ..... ..... ②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<u>범위</u> .....